

##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 공모

서울특별시에서는 민간단체의 개발도상국 국제개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법인·단체의 민간외교활동 역량강화 및 서울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고취하고자,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제14조 및 「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“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”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0년 5월 일

서울특별시장

### 1. 사업명 :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

-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기초교육권 보장 및 보건 향상을 위한 것으로 비종교적, 비영리적, 비정치적인 사업

### 2. 신청자격 :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, 비영리민간단체

-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,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(2020.6.4.)까지 등록증을 교부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
  - ※ 공고일 현재 허가, 등록 취소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
- 최근 2년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(ODA)사업에 대한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·단체로서, 사업관련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경우
- 인건비,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, 해외에서 국제개발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기관 우선 선발

### 3. 사업기간 : 2020. 7월 ~ 12월

### 4. 공모분야 : 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원 교육, 보건 분야 자유제안

분야	사업내용 (예시)
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사회 초등학교 학습시설 개선, 교재개발 및 교수법 연구</li> <li>취약계층대상 기자재 및 교보재 지원 등을 통한 학습기회 보장</li> </ul>
보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저소득 가정의 아동·여성에게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</li> <li>빈곤지역/재해지역 아동에게 영양제 및 기초생필품 지원사업</li> <li>코로나19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위생/보건키트 지원사업</li> </ul>

※ 서울의 긍정적 이미지 고취 및 부정적 고정관념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선정

### 5. 신청형태 : 단체별 1개 사업(분야별 중복지원 불가)

### 6. 지원규모 : 총 195백만원(민간단체 경상보조금)

분야	선정규모	지원규모	비고
교육	4개 단체(사업)	단체별(사업별)	부가세 포함
보건	4개 단체(사업)	20백만원 ~ 최대 29백만원	

※ 세부 지원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(선정단체 수, 지원금액 등)

※ 코로나 19 위험성 등으로 현지 사업이 어렵거나, 참여자 안전계획이 미흡한 사업은 탈락

### 7. 심사선정 방법

- 위원구성 :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
- 심사일시 : 별도통보
- 심사기준
  - ① 사업계획 평가 : 지원대상의 적정성, 계획의 명확성, 코로나19로부터 안전확보 준비성, 현지수요 적합성 등
  - ② 예산효과성 평가 :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, 자체부담 정도(재정·물질적)
  - ③ 사업기관 평가 : 단체(법인)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, 해외 국제개발지원사업 수행실적 등
- 심사방법
  - **요건심사** :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심사 (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)
    - ▶ 공모 제외단체 및 제외사업 해당 여부, 사업의 적격성 및 단체의 관련성 등
  - **내용심사** :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
    - ▶ 사업수행의 적격성,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등을 최종 심사하여 적격단체 선정
    - ▶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 조정
    - ▶ 코로나 19 위험 등으로 현지 사업 어렵거나, 참여자 안전계획이 미흡한 사업은 탈락

### 8. 지원 제외 대상

- 제외 사업
  -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·사업
  - 외교부 고시 적색(철수권고) 및 흑색(여행금지) 지역대상 사업신청 불가
  - 코로나 19관련 현지 사업이 어렵거나, 참여자 안전계획이 미흡한 사업
  -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
  - 일회성,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(소모성 캠페인, 교육중심의 세미나 등)
  -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

○ 제외 법인·단체

- 최근 2년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(ODA)사업에 대한 수행 실적이 없는 법인·단체(수행실적이 있더라도 사업관련 제재나 불이익 받은 사례있을 시 제외)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- 허가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
-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
-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/ 유사단체(인적·물적 구성의 유사)의 이중 신청
-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·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등

9. 제출서류

- 지원 신청서, 단체소개서(법인(단체)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), 사업계획서(요약서포함)
  - ※ 코로나19으로부터 사업참가자 등의 안전을 우선 확보된 사업추진 방안 소명 필수
- 법인(단체)의 정관, 법인허가증(단체등록증) 사본

10.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0. 6. 2.(화) 09:00 ~ 6. 4.(목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우편발송(소인날자 기준) 또는 이메일 제출(leeonseoul@seoul.go.kr)
  - ※ 6월 4일(목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(우편은 소인날자 기준)

11. 결과 발표 : 2020. 6. 18.(목) (예정), 선정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

12. 보조금 지급, 사업평가 및 정산

-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(이행보증보험 제출-자비부담)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
-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(계좌) 사본 및 자부담금을 예치한

통장사본(자부담있는 경우에 한함)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 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

-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2회 분할교부(1차 70%, 2차 30%)
-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(필요시 현지조사 등)
-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(집행내역 등), 회계검증보고서 제출

13. 기 타

- 사업신청단체가 협약체결 전 사업수행 포기 시, 차순위 적격자를 협의 하여 운영 단체로 선정
-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함
-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·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
-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집행현황, 평가결과(최종실적보고서, 평가등급) 등 일체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임
-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담당관(☎2133-5275)로 문의바람